

환경부 공고 제2012-598호

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2012년 12월 28일 / 환경부장관

1. 개정이유

석면피해구제 대상 질병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석면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 지급 대상 추가 및 요양생활수당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석면질병의 정의에 미만성 흉막비후를 추가하고 요양급여,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 지급 기준을 정함
[안 제2조제1항, 제7조 및 제9조제1항]
- 나.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함(안 제7조제1항)
- 다. 현행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을 좀 더 명확하고 간단하게 정리함(안 별표 1)
- 라. 요양생활수당의 지급금액을 현행기준 대비 20% 상향 조정함(안 별표 2)
- 마. 석면폐증 제2급 및 제3급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도 특별유족 신청이 가능하도록 특별유족 인정기준을 변경함
[안 별표 3]
- 바.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기관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추가함(안 제45조의2)

환경부 공고 제2012-589호

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2012년 12월 18일 / 환경부장관

1. 제안이유

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과태료의 부과기준(안 제43조제1항[별표 8] 1.일반기준 중 라목)

측정기기를 부착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의 "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일에 10회 이상"에서 "일(日)평균치가"로 합리적으로 개선

환경부 공고 제2012-587호
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2012년 12월 14일 / 환경부장관

1. 제안이유

측정기기부착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, 보유한 기기현황·기기 점검내역은 기록·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측정기기부착사업자에 대해 기록의무 부여(안 제50조의2 신설)

- 1) 측정기기부착사업자는 보유한 측정기기 현황, 자료수집기 현황, 유량계 현황을 기록·보관하여야 함
- 2) 측정기기부착사업자가 측정기기를 교정하는 경우 교정한 내용을 점검일지에 기록·보관하도록 하여 측정기기를 고의로 조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

나.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 행정처분기준 개선(안 제105조[별표 22] 제2항가목비고 11)

- 1) 자동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행정처분기준을 기존의 "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"에서 "일(日)평균치가"로 합리적으로 개선

다. 위임업무 보고대상 확대(안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별표 23)

- 1) 시·도지사 및 유역(지방)환경청장은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관리업무 현황을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기초자료 확보 체계 구축

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(www.me.go.kr) » 법령·정책 » 법령정보 » 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